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 
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 
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791 |
|----------|-----|

2018. 4. 5.(목)  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18년 3월 14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3월 22일

(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맹경재)

가. 제안이유

○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 기능지구 과학사업화 시설의 효율적인  
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위치 및 기능(안 2조, 안 4조)

- 위치 :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

- 기능 : 과학사업화 연구개발,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, 인력 양성 등

○ 위탁운영 및 운영비(안 5조, 안 7조)

- 위탁운영 :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가능
- 위탁범위 : 입주공간 지원·시설관리,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, 홍보, 마케팅,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
- 운영비 : 시설임대료, 수탁자부담금,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전문위원 : 오문석)

○ ‘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’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 기능지구 과학사업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목적을 검토한 결과 제정은 타당함.

○ 다만, 안 제7조 운영비 지원과 안 제8조 이용료 등의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(이하 “플라자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설치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과학벨트”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·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2. “거점지구”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3. “기능지구”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·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4. “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”는 기능지구별 특성화 여건을 활용하여 산·학·연 공간적 통합으로 과학사업화를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.

제4조(기능) 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
2.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연구기관·대학·기업에 대한 창업 및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지원

3.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과학 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
4.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관련 행정지원 및 외부기관 편의시설 제공
5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위탁운영)** 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.

1. 입주공간 지원 및 시설 관리
2. 과학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, 홍보, 마케팅
3. 과학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
4. 그 밖에 플라자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플라자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

**제6조(수탁자의 책무)** 수탁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,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7조(운영비 지원)** ① 플라자의 운영비는 시설 임대료, 수탁자부담금,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도지사는 플라자의 원활한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이용료 등의 징수)** ① 플라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이용료, 시설 임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플라자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이용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에 대해서는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
2.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

**제9조(지도·감독)** 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관리·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10조(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·고시하고,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11조(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·고시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·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1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목적
2. 지구의 명칭·위치 및 면적
3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·고시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
4.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